

전 자 장 치 부 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톱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톱킹행위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사실 통지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스토킹 행위자 신고서) 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조의11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8(관할경찰관서의 장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9(잠정조치 효력상실 통지 통지) 법 제31조의6제6항에 따른 잠정조치 효력 상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신고서(스토킹행위자)

※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

결정기관:	결정일자:
-------	-------

피해자와의 관계:

1. 주소·연락처(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주민등록주소: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집전화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타 연락처:	
(문자서비스 []동의, []동의안함)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수신된 각종 정보는 본인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타인양도, 분실 등 본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수신된 문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 사실이 공개된 범위	[]가족, []직장, []학교, []친구, []이웃, []친인척
우편물수령지	[]주민등록주소, []실제 거주지, []판결정문주소, []직장주소, []기타 주소 (기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m²]

2. 직업(무직이면 전직을 기재한 후 4. 가족 사항으로 가십시오) 전직(前職):

직업:	직장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3. 직업 상세 사항

부서:	근무형태:	급여액:	근무시작일:
직위:	[]주간, []야간, []2교대, []3교대, []기타()	만원	년 월 일
근무시간대:	급여형태:		
: ~ : (시간/일)	[]연봉, []월급, []주급, []일급, []시급		

4. 신체 정보

키: cm	몸무게: kg
-------	---------

5. 가족 사항

혼인 관련	[]미혼, []기혼, []동거, []별거, []이혼, []사별, []기타()
-------	--

관계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비고

6. 차량 관련 사항

차량(원동기 포함):	차종:	차량번호:	
[]있음, []없음	색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관찰(지)소장 귀하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전자장치 부착사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스토킹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전자장치 부착일		. . .		
부착 기간		. . . ~ . . .		
담당자 및 연락처				
비 고		신고서 사본 등 참고자료 별첨		

끝.

발 신 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피해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성명		연락처	
	관계			
스토킹범죄의 동기·내용·수법				
담당자 및 연락처				
비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잠정조치 효력상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6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6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스토킹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효력상실 관련	효력상실 사유			
	효력상실 일자	. . .		
비 고	불송치 결정서 사본 또는 불기소 결정서 사본 등 별첨			

끝.

발 신 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6(스토킹 행위자 신고서)</u> <u>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u> <u>조의11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의</u> <u>6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u> <u>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u> <u>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u> <u>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u> <u>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4조의8(관할경찰관서의 장의</u> <u>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u> <u>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관할</u> <u>경찰관서의 장의 통지는 별지</u> <u>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4조의9(잠정조치 효력상실 통</u> <u>지 통지) 법 제31조의6제6항 또</u> <u>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u> <u>조치 효력 상실의 통지는 별지</u> <u>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u>